

일본의 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정보신청기관 : 농림수산부

I. 서론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취지의 일본의 법률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근거한 현실적인 운용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수위 및 실제의 판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동물보호법의 운용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
(1973년 10월 1일 법률 제105호, 2006년 6월 6

일 최종개정, 이하 ‘동물보호법’이라 한다)은 법제정의 목적, 기본 원칙, 동물애호주간의 제정, 동물취급업자의 규제, 주변생활의 보전, 동물에 의한 위해의 방지, 애호동물의 가혹한 살상·학대 및 유기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목적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동물의 사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간에 동물을 사랑하는 기풍을 형성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과 평화의 감정을 함양함과 동시에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법 제1조).



1) E-Gov, 電子政府の総合窓口(<http://law.e-gov.go.jp/htmldata/S48/S48HO105.html>).

2. 기본원칙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생명이 있음을 감안하여 누구도 동물을 함부로 살해, 상해, 고통을 주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배려하고, 습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법 제2조).

3. 동물애호주간

동물보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대한 사랑과 적절한 사육에 관하여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애호주간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물애호주간은 9월 20일부터 동월 26일까지이다. 또한 동물애호주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알맞은 행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법 제4조 제2항).

4. 동물취급업자의 규제

동물취급업자는 등록의무,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성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동물취급책임자의 선임의무가 있다(법 제10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5.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다수의 동물을 사육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시장·군수가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법 제25조).

6. 동물에 의한 피해의 방지

위험동물 사육에 관하여 사육주의 준수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는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하는 자는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6조).

7. 보호동물의 가혹한 살상·학대·유기의 금지

보호동물을 살해, 유기, 학대한 자에 대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서 벌금 200만원 이하에 이르기까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법 제44조 내지 법 제47조). 또한 경미한 경우(신고의무 위반)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에 이르기까지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법 제50조).

자세한 내용은 ‘VI. 처벌수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Ⅲ. 동물보호관리행정의 개요²⁾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가 자치사무로서 실시하고, 환경성은 각종 기준 등의 책정, 보급개발 및 시·도·군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 국가(환경성)

1) 조직

동물보호에 관하여는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물보호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2) 업무내용

위 환경성 자연환경국 총무과 동물보호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①동물보호주간행사 등 보급개발사업의 실시, ②동물의 적정한 사육·보관·처분 등을 위한 각종 기준의 책정, ③동물취급업자의 준수기준의 책정, ④위험동물의 지정, ⑤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다.

2. 지방자치단체

1)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의 대부분은 ‘공중위생부’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업무내용

위 공중위생부의 주요 업무는 ①동물의 보호 및 관리의 보급개발, ②동물취급업자에 관한 규제의 실시, ③위험동물사육에 수반한 폐해행위에 대한 권고 등의 조치, ④개, 고양이의 인수, ⑤보호추진위원회의 위촉, 협의회 설치 등이다.

3. 관련조례의 제정현황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2008년 현재 47시·도 중 45시·도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Ⅳ. 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1. 가정동물의 사육수 및 추이³⁾

(단위:%)

연도	1979	1986	2003
개	46.1	55.9	62.4
조류	37.6	25.3	7.7
고양이	26.6	26.6	29.2
기타 포유류	4.5	3.1	4.6
파충류	0.4	0.5	2.4

(2003년 현재, 단위:만)

구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생류	어류	합계
가정동물	2397	1606	36		3446	



2) 動物の愛護管理の現状等(環境省,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arikata/h16_01/mat03.pdf).

3)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平成19年11月12日, 環境省告示104号,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baseline.html).

2. 전시동물에 관한 시설⁴⁾

동물원, 수족관 등 전시를 목적으로 한 시설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2002년 현재 전국에 약 900시설이 존재한다.

3. 실험동물의 판매수⁵⁾

실험동물의 판매수는 2001년 현재 쥐 약 870만 마리, 모르모트 약 34만 마리, 햄스터 약 5만 7천 마리, 조류 약 2만 마리, 개 약 1만 8천 마리, 고양이 약 600마리 등이다.

4. 산업동물의 사육 및 출하 수⁶⁾

산업동물은 2003년 현재 양계 약 5억 8천 마리, 채란계 약 1억 4천 마리, 돼지 약 1천만 마리, 육용 소 약 280만 마리, 우유용 소 약 170만 마리이다.

5.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상황⁷⁾

(2008년 9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동물취급업 총시설 수		43,224
동물취급업 등록업종 내역	판매	21,872
	보관	16,490
	임대	765
	훈련	2,820
	전시	1,900
업종별 내역계		43,847

6. 위험동물의 사육·보관의 실태

(2008년 9월 1일 현재)

포유류	소재지 수	685
	마리	11,708
조류	소재지 수	102
	마리	308
파충류	소재지 수	578
	마리	27,665
계	소재지 수	1,212
	마리	39,681



- 4) 展示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平成16年4月30日, 環境省告示33号,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baseline.html).
- 5) 実験動物等の飼養保管並びに苦痛の軽減に関する基準(平成18年4月28日, 環境省告示88号,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baseline.html).
- 6) 産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昭和62年10月9日, 総理府告示22号,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baseline.html).
- 7) 動物取り扱い業者の登録状況(平成20年9月1日, 環境省自然環境局総務課 動物愛護管理室,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statistics/work.html).

7. 개에 의한 물린 사건 수⁸⁾

연도	합 계
1989	10,777
1994	7,632
1995	7,545
1996	6,854
1997	6,564
1998	6,307
1999	6,278
2000	6,576
2001	6,384

8. 개, 고양이의 회수⁹⁾ 및 처분 통계

(2008 현재)

		개	고양이	합계
회수 수	어미	90,810	50,867	315,107
	새끼	22,678	150,752	
처분 수	어미	32,774	8,311	41,085
	새끼	82,464	193,748	276,212

V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지침¹⁰⁾
(2008년 환경성 고시)

1. 기본적인 시점

2008년 일본 환경성에서 발표한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지침에 따르면 (1) 대다수의 국민의 공감을 얻고, 폭넓은 각계각층에 대한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학교, 지역, 가정 등에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국민적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활동의 양양), (2)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생활양식 및 가치관 등에 깊은 관련이 있고,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시책의 효과 및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책을 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각종 시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장기적 시점에서 종합적, 체계적 접근), (3) 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수의사회, 업계단체, 동물애호단체, 동물의 소유자 등의 단체, 학술연구단체, 조사연구기관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하에 관계자의 네트워크가 국민 및 지역간 중첩적으로 만들



8) 動物の愛護管理の現状等, 9 쪽(環境省, 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2_data/arikata/h16_01/mat03.pdf).

9) 여기서 '회수'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동물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것 및 버려진 것을 회수한 것을 포함한다.

10)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平成18年10月31日環境省告示第140号、2006年).

필요가 있는 점(관계자간의 협동관계의 구축), (4)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정비를 위해 동물 애호추진위원 등의 위탁, 동물애호관리시설의 확충, 조사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기반의 정비) 등을 기본적인 시점으로 하고 있다.

2. 시책별 대처방안

1) 보급계발

(1) 현상

동물의 애호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널리 국민이 동물의 학대방지 및 동물의 적절한 취급에 관해서 바른 지식 및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보급계발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의의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생명존중, 애호 등의 감정의 함양의 관점으로부터, 특히 어린이가 풍성한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년, 동물과의 접촉이나 가정동물 등의 적절한 사육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오고 있다.

(2) 시책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단체등과 연대를 계속하여 학교, 지역, 가정 등에 있어서 동물 애호주간행사 및 감성함양강습회 등의 실시, 각종 보급계발자료의 작성, 배포 등에 의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의 실시가 필요하다.

2) 적정사육의 추진에 의한 동물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1) 현상

국민의 약 1/3이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2002년 현재) 또한 근년의 낮은 출생률 및 고령화 사회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동물 등의 사육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적정사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아직도 유기,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도·군에 있어서 개 및 고양이의 인수는 종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으나 절대수는 연 약 42만 마리(2004년 현재)이고, 이 중 약 94%가 도살 처분되고 있다.

(2) 시책

첫째로, 마구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거세조치의 추진, 안이한 사육의 억제 등에 의한 죽을 때까지 사육하는 것을 철저히 하여 인수를 줄임과 동시에 원래의 소유자 등에 반환 또는 사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양도 등을 함으로써 도살처분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동물이 생명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사육방법, 금지행위의 주지철저 등을 행하여

유기 및 학대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성은 생활환경의 보전, 적정한 사육 수, 번식제한, 고양이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가정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¹¹⁾

3) 동물에 의한 위해 및 폐해의 방지

(1) 현상

동물의 부적절한 사육이 원인이 되어 동물에 의한 위해 및 주변의 생활환경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 불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에 의한 위해 및 폐해의 문제는 소유자와 인접주민과의 사이에 감정적 대립을 유발하기 쉬운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주도로 합의형성의 틀을 만드는 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② 시책

지역에 있어서 환경의 특성, 차이점을 고려하여 집합주택에서의 가정동물의 사육, 도시에서의 개, 고양이의 관리방법, 소유자가 없는 고양이의 적정관리방법을 검토하여 동물의 애호 및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도쿄에 있는 타찌가와(立川)시는 2009년 7월 1일 고양이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¹²⁾

4) 소유명시(개체식별)의 조치

(1) 현상

개 또는 고양이에 관한 소유자의 명시(개체표시)의 실시율은 2003년 현재 약 25%에 그치고 있다.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동물이 자기 소유에 관계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동물의 도난 및 미아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미아가 된 동물의 소유자를 발견하기 쉽게 하며, 소유자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에 의한 소유자의 의식의 향상 등을 통하여 동물의 유기 및 도망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2) 시책

관계행정청 및 단체의 협력하에 공적 기관에 의한 데이터의 일원적 관리체제의 정비, 개체식별기술의 보급, 마이크로칩의 비치 등 개체식별수단의 보급을 위한 기반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성은 2005년 3월 ‘마이크로칩에 의한 동물의 개체식별의 개요’¹³⁾를 발표하였고, 민간단체로서 2002년에 ‘동물아이디보급추



11) 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2007年11月12日, 環境省告示第104号).

12) 立川市猫の飼育・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21年7月, 立川市, 2009年).

13) マイクロチップによる動物の個体識別の概要(平成17年3月, 環境省, 2005年).

진회의(AIPO)'가 설립되어 현재 일부 지방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5) 동물취급업의 적정화

(1) 현상

중전의 동물취급업에 관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동물취급업 전반에 있어서 시설 및 관리의 수준의 향상이었다.

(2) 시책

동물취급의 적정화를 위해 동물취급업자에 대하여 표지 등의 게시, 판매시에 있어서 동물의 특성 및 상태 등에 관하여 사전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지철저를 도모하며, 또한 우수한 동물취급업자의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전체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물취급업자에 관한 사육시설의 구조 및 동물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¹⁴⁾

6) 실험동물의 적정한 취급의 추진

(1) 현상

실험동물의 사육 등에 관하여는 실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과 더불어 고통의 경감에 관한 기준¹⁵⁾이 있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시책

동물을 과학상 이용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진전 및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만, 동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학상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적 기준(3R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3R원칙이라 함은 Replacement(대체법의 활용), Reduction(사용수의 삭감), Refinement(고통의 경감)을 의미한다.

7) 산업동물의 적정한 취급

(1) 현상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관점으로부터 산업동물의 적정한 취급에 관해서는 국제적 움직임, 관계법령 등의 정합성, 일본의 국내사정 등을 고려한 후에 사육의 방법을 검토하고 그 보급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시책

이를 위해 국가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를 배려하고 산업동물의 사육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이



14) 総理令2000年6月30日第73号.

15) 実験動物の飼養及び保管並びに苦痛の軽減に関する基準(平成18年4月28日環境省告示88号, 2006年).

16) 産業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昭和62年10月9日総理府告示第22号, 1987年).

를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를 위해 '산업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이 1987년부터 총리령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¹⁰⁾

VI. 처벌수위

1. 행위 유형에 따른 형사벌

동물보호법은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 형이 중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4조 제1항).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주지 않아 쇠약하게 함으로써 학대하거나 함부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4조 제2항, 제3항).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로서 법령에 규정된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을 행하려는 자는 환경성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종류에 따른 사

육 또는 보관을 위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위험동물을 사육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하여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26조 제1항, 법 제45조 제1항).

② 또한 부정의 수단으로 위 허가를 얻은 자에게도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5조 제2항).

③ 위 허가를 얻은 자는 위험동물의 종류 및 수, 특정 사육시설의 소재지, 특정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위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 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한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28조 제1항, 법 제45조 제3항).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동물취급업(판매, 보관, 임대, 훈련, 전시 등)을 행하는 자는 당해 영업을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동물취급업을 운영한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법 제46조 제1항).

② 또한 부정의 수단으로 위 허가를 얻은 자에게도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6조 제2항).

③ 시장·군수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6조 제3항).

- ④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의 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환경성령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시장·군수가 정한 준수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취급 책임자 선임 및 동 책임자의 연수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기한을 정하여 동물의 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바 이 명령에 위반한 자에게도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21조 제1항, 동조 제2항, 법 제22조, 법 제23조 제3항).

5)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①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취급업의 업종별 업무의 내용 및 실시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성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사육시설의 관리방법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제 47조 제1항)
- ② 위험동물사육자는 위험동물의 종류 및 수, 특정 사육시설의 소재지, 특정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위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방법에 대하여 환경성령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인 경우, 또는 성명·명칭·주소·법인의 명칭·사육 또는 보관의 목적에 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47조 제1항)

- ③ 시장·군수는 동물취급업의 등록·실시·거부·갱신·변경의 신고·등록부의 열람·폐업의 신고·등록의 말소·표지의 게시·등록의 취소 등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동물취급업자에 대하여 사육시설의 현황, 동물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게 위 형을 적용하고 있다(법 제24조 제1항, 법 제47조 제2항).
- ④ 시장·군수는 동물취급업의 등록·실시·거부·갱신·변경의 신고·등록부의 열람·폐업의 신고·등록의 말소·표지의 게시·등록의 취소 등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동물취급업자에 대하여 사육시설의 상황, 동물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군의 직원에게 당해 동물취급업자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사육시설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바 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위 형을 적용하고 있다(법 제24조 제1항, 법 제47조 제2항).
- ⑤ 시장·군수는 다수의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이 원인이 되어 주변의 생활환경이 훼손되는 결과 환경성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태를 발생케 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사태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바 이 명령에 위반한 자

에게도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항, 법 제47조 제3항).

2. 행위 유형에 따른 행정벌(과태료)

1) 200만원의 과태료

동물취급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었던 자, 법인이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결정 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동물취급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물취급업자였던 개인 또는 동물취급업자였던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은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항, 법 제49조).

2) 100만원의 과태료

동물취급업자는 환경성령의 규정에 의해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기타의 환경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는바 동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도 위 형에 처하고 있다(법 제18조, 법 제50조).

VII. 동물보호법의 위반건수

동물보호법 위반건수는 매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다.

연도	기소	불기소
1989	3	3
1990	2	2
1991	4	1
1992	4	0
1993	4	4
1994	2	9
1995	3	1
1996	1	11
1007	5	7
1998	4	4
1999	0	3
2000	4	11
2001	7	10
2002	18	22
2003	3	9
2004	8	21
2005	15	27
2006	12	35

(출전: 검찰통계연보)

VIII 법원의 판결예

1. 1989년부터 2000년까지

학대, 유기, 영양실조시킨 행위 등에 대하여 최저 4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2.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대, 유기, 먹이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시킨 행위 등에 대하여 벌금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으며, 징역형은 최저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최고 징역 1년 2월(실형)에 처했다.

3. 징역형의 사례

형량	선고일 및 재판소	내용
징역 1년 2개월	2002. 10. 23. 선고 고베지방법판소 히메지지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 6마리를 7층에서 아래로 던져 버려 그 중 5마리는 사망, 한 마리는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주거침입죄도 적용하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2. 12. 11. 선고 동경지방법판소	피고인은 2002년 9월 4일 공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의 목을 손으로 비틀어 기관지절단에 의한 질식사 시키고, 동월 9일 고양이 한 마리를 비닐 봉지에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에 넣어 두어 아사시킨 사건이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2. 12. 27. 선고 우츠노미야지방법판소	피고인은 2002. 3. 15. 오후 7:30경 공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의 머리 및 배 부분을 발로 차 죽이고, 동년 3월 하순경 공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의 머리 및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 죽이고, 동년 5월 15일 오후 6:50경 공원에서 고양이의 배를 차고 끈으로 목을 묶어 죽이고, 동월 오후 8시경 공원에서 고양이 한 마리의 머리 및 배를 수회 발로 차 살해한 사건이다(기물손괴죄도 포함되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02.10. 21. 선고 후쿠오카지방법판소	2002년 5월 6일 11시 10분부터 동월 7일 오전 3시 20분 까지 후쿠오카시에서 고양이 2마리의 꼬리 및 왼쪽 귀를 가위로 절단하여 함부로 상해를 가하고, 목을 끈으로 졸라 자택 부근의 하천에 던져 버려 죽인 사건이다.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03. 12. 11. 선고 동경지방법판소	시 직원이 들고양이를 살해한 사건이다.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2003. 6. 23. 선고 우쓰노미야지방법판소	다른 사람이 사육하고 있는 개를 골프채로 때려 죽이고,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끈으로 목을 매 죽여 사체를 나무 및 난간에 방치한 사건이다.

4. 벌금형의 사례

형량	선고일 및 재판소	내용
벌금 300만원	2003. 11. 25. 선고 오다하라 간이 재판소	애견미용학교에서 사육견에 먹이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사건이다.
벌금 300만원	2002. 7. 12. 선고 와카야마 간이 재판소	피고인이 2002. 6. 12. 오전 6:30경부터 동월 오전 6:50까지 사이에 공원에서 고양이 2마리를 함부로 밟아 죽인 사건이다.
벌금 300만원	2001. 2. 15. 선고 동경 간이재판소	피고인이 2000. 12. 23. 집에 들어온 고양이 한 마리를 화살로 명중시켜 죽이고, 동월 24일 집에 들어온 고양이 한 마리를 화살로 명중시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벌금 200만원	2002. 1. 19. 선고 고베 간이재판소	피고인이 2002. 1. 19. 오전 1:30경 개에게 등유 1.5리터를 붓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벌금 200만원	2002. 9. 19. 선고 쿠마모토 간이 재판소	피고인이 7명과 공모하여 2002. 1. 7. 오전 1:30경 소 6마리를 공원에 운반 방치하여 동물을 유기한 사건이다.

벌금 150만원	2003. 3. 13. 선고 나가노현 이나 간이재판소	피고인은 나가노현에서 승마목장을 경영하던 중 1999년 3월 9일부터 동년 4월 11일까지 이미 죽은 말 2마리를 방치시키고, 말똥의 청소를 하지 않고 비위생의 상태에서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아 키우고 있던 말 2마리를 영양실조상태에 빠지게 하여 학대한 사건이다.
----------	-------------------------------------	---

인을 통하여 동물의 애호 및 관리가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동물애호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지침의 제정 및 처벌수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IX. 결론

1973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관계 명령·규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환경성에서의 각종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

임 동 번

(법무법인 원전 변호사)